

**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서(제11조의2제1항)**

처리기간
15일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~
	주소			
소유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~
	주소			
자동차	차종(차명)		형식	
	등록번호			
차의운행	용도			
	운행노선			
	지정구간			

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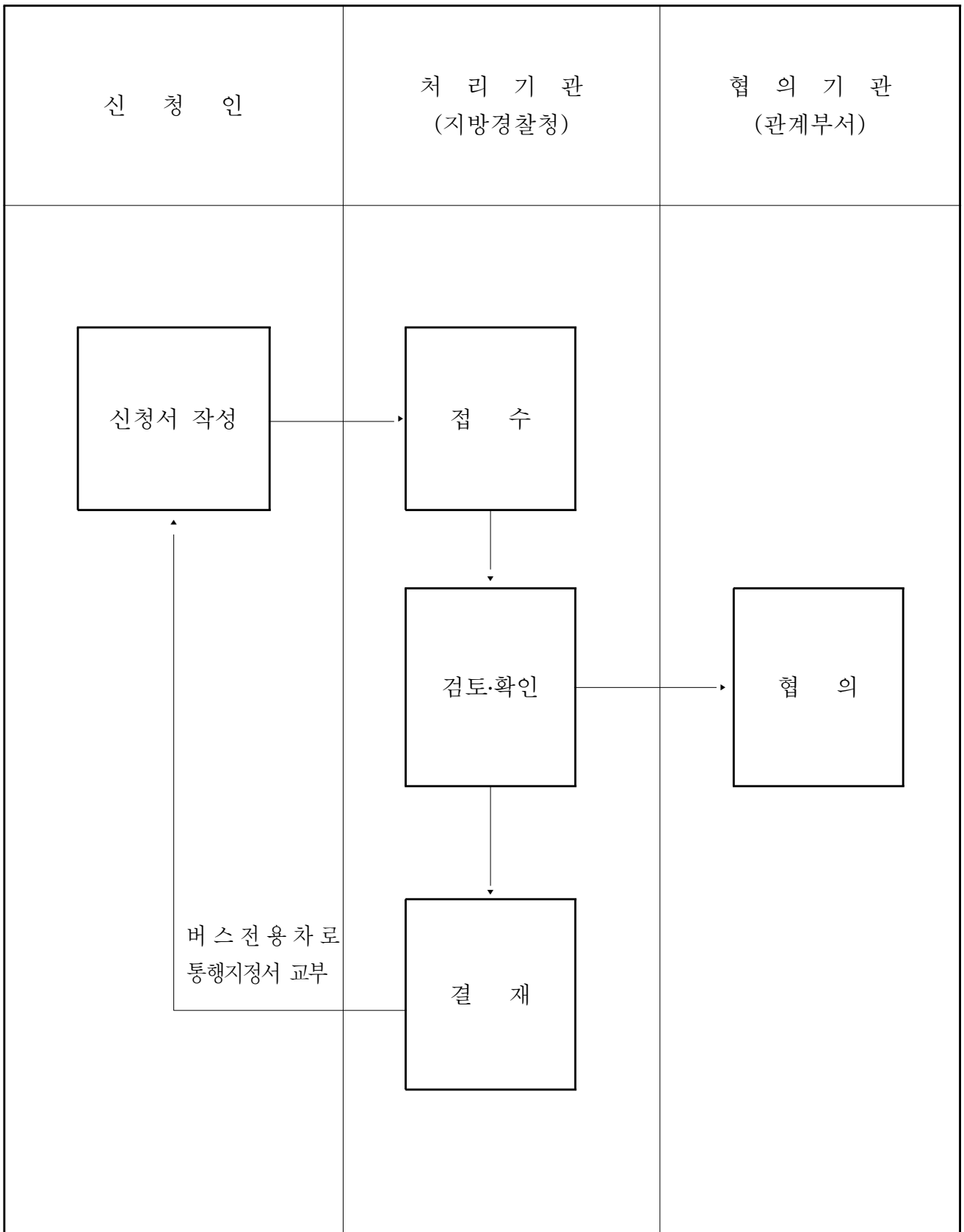
지방경찰청장 귀하

구비서류 : 없음	수수료
	없음

※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하십시오.

위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뒷면)



※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